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매뉴얼

2007. 12.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1심사팀

목 차

제1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개요 ····· 3

1. 지리적 표시란 ····· 3
2. 지리적 표시의 요건 ····· 3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4
4. 출원동향 및 심사현황 ····· 5

제2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특수성 ····· 6

1. 특유의 출원 및 심사 ····· 6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 ····· 7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의 제한 ····· 8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특유의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 ····· 8

제3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세부심사요령 ····· 9

1. 방식심사 ····· 9
2. 관련부처 의견문의 ····· 11
3. 출원인 적격여부 ····· 12
4. 정관 및 정관요약서 심사 ····· 13
5. 표장의 심사 ····· 17
6. 지정상품의 심사 ····· 18

7.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심사 ····· 19
8.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 21
9.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 22
10.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 ····· 22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현황 및 관련 참고자료 ····· 24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현황 ····· 24
2. 표준정관 및 부속서 예시 ····· 27
3.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제도 비교 ····· 57
4.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 58
5. 산림청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 60

제5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관련 법규 ····· 61

1. 상표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규정 ····· 61
2. WTO/ TRIPs 협정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 ····· 77

제1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개요

1. 지리적 표시란 ?

○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3호의2)

○ 여기서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며,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도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일반적인 산지표시와는 구별됨.

2. 지리적 표시의 요건

○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 지리적 표시는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품은 모든 산업제품을 포함하므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상의 모든 표장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명칭(name)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명칭과는 다르다.

○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 지리적 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될 필요는 없다.

○ 본질적으로 비롯

-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특정 지역의 자연적, 인적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결정적으로 좌우되어야 한다.

- TRIPs 협정상의 'essentially'에 대응한 표현으로, 배타적(exclusively)이고 유일한 요소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낼 것

- 법문상 생산·제조·가공의 모든 과정이 특정지역에서 이루어 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따라 일정지역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상표법제2조제1항3의4)

○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

○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에서 출시되는 상품 일반의 출처와 품질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는 그 특성상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제도를 통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통상의 단체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4. 출원동향 및 심사현황

○ 2005년 7월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7.10월말 현재 총 44건이 출원되었으며 내국인이 42건, 외국인이 2건을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10월말 현재 총44건이 출원되어 10건이 등록확정 되었으며, 5건은 거절결정, 10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9건은 심사대기중에 있음. 한편, 거절결정되어 거절불복심판에 계류 중인 1건이 있음.

【연도별 출원동향】

(단위 : 건)

구 분	전체		
	합 계	내국인	외국인
합 계	44	42	2
2005	4	4	-
2006	16	16	-
2007.10월말	24	22	2

【연도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출원	1차 심사			심사 종결		
		합계	출원공고	의견제출통지	합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합계	38	25	6	19	15	10	5
2005	4	4	1	3	4	1	3
2006	16	16	5	11	11	9	2
2007.10월말	24	5	-	5	-	-	-

※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불복현황

○ 2007.10월말 현재 전체 38건 중 1건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계류 중임
- 출원번호 제44-2006-1호(보성녹차)

제2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특수성

1. 특유의 출원 및 심사

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유의 출원절차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다. (상표법제3조의2 괄호)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며,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상표법제9조제3항)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은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그 출원서에 서비스업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유의 거절이유

○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의 정의에 불합치 하는 경우(상표법제23조제1항제6호)

○ 해당지역의 정당한 업자에 대하여 정관상 단체가입을 금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상표법제23조제1항제5호)

○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예외

- 제도의 특성상 산지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특정상품의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해당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가능하다.(상표법 제6조제3항)

○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 제8호,제9호, 동조 제5항의 예외

- 위 규정들은 공히 타인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저촉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 적용된다.(상표법 제7조 제1항7의2,8의2,9의2, 제5항 괄호)

○ 상표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보완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제7조 제1항12의2)

○ 상표법 제8조의 예외
- 상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표법제8조제6항)

- 상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표법제8조제7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의 예외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도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등록이 가능하다.(동항 단서)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

가. 적극적 효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나. 소극적 효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소극적 효력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상표법 제66조제2항)

○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규정(상표법제66조제1항제2호~제4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 인정된다.(상표법 제66조제2항제2호~제4호)

3.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의 제한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그 특성상 산지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51조제2항)

- 상표법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당해 지역의 다른 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또는 동음이의어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인 경우

-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특유의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

가. 등록무효사유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원시적 무효)

○ 등록 후에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상표법 제71조제1항제6호)

나. 등록취소사유

○ 통상의 단체표자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소속단체원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제73조제1항제5호)

-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였으나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73조제1항제10호)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에 단체표장권자가 해당 지역의 정당한 업자에 대하여 정관상 단체가입을 금지하가나 실질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상표법 제73조제1항제11호)

- 단체표장권자 또는 소속단체원이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한 경우(상표법 제73조제1항제12호)

제3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세부심사요령

1. 방식심사

<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서 정한 첨부서류 확인 >

○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입증서류

○ 지리적 환경과 상품과의 연관성에 관한 서류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범위(지도 포함)

○ 구성원이 그 업을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입증서류

○ 대표단체 확인서

○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사실 입증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제출서류]

1. 필수적 제출서류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출원서

1. 상표견본 1통
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임의적 제출서류

○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현황(당해 지역전체, 출원인, 소속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2. 관련부처 의견문의

○ 특허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상표법 제22조의2제3항)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시행이후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대해 관련부처에 총14건(농림부13, 해양수산부1)을 문의하여 10건이 회신됨.(2007.10.30현재)

- 이중 9건은 문의당시 농림부에서 등록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회신내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화천화악산토마토”(제44-2006-14호)의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회신이 옴에 따라 출원인이 보완하게 하거나 납득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에 대해 재의견문의함.

- 아울러 관련부처에 대한 의견문의 시기에 있어서 그동안 특허청 절차를 진행한 후 출원공고 전에 문의하였으나 심사 장기화 우려 등으로 출원 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견문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

【의견문의 현황】

(2007.10.30 현재)

지리적표시 (관련부처)	문의일자	회신일자	회신내용
장흥표고버섯(농림부)	'06. 8.10	'06. 9.11	·중복등록은 바람직하지 않음
인제용대황태(해수부)	'06.11. 8	-	·제도 미시행으로 회신보류
양양송이,진도홍주, 고흥유자(농림부)	'06.11.28	'06.12.23	·모두 심사가 진행중인 건으로 이중등록은 출원인의 과도한 부담이며 행정비효율
고창복분자, 한산모시, 경산대추,순창고추장, 이천한우(농림부)	'07. 2. 2	'07. 2.27	·고창복분자,한산모시,경산대추 : 기등록되었으며 이중등록은 출원인의 과도한 부담이며 행정비효율 ·순창고추장 : 주체상이로 문제발생우려 ·이천한우 : 관련내용 없음
화천화악산토마토 (농림부)	'07. 9. 4	07.10.29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부적합
공주알밤,정안밤, 곡성멜론(농림부)	'07. 9.27	-	·미회신

3. 출원인 적격여부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다. (상표법제3조의2 괄호)

○ 따라서 일정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상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 단체, 생산·가공자단체 등이 출원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은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품목별 농협·축협·수협, 영농조합법인, 이들의 연합회, 협의회 및 생산자, 가공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 조합법인 및 사단법인 예시

○ 특별법에 의한 조합법인

- 농업.농촌기본법: 영농조합법인(준칙주의: 주무부처의 인가 불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인가주의: 전국규모-중소기업청장, 지역규모-광역시·도지사)
- 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인가주의: 농림부장관의 인가)
-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인가주의: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 민법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사단법인

(허가주의: 전국규모- 주무부처장관의 설립허가,
지역규모- 광역시·도지사의 설립허가)

【이외 출원인 적격을 인정한 사례】

- 농업회사법인 안흥명품합명회사(출원번호 제44-2007-7호)
- 영어조합법인 인제용대황태(출원번호 제44-2006-3호)

○ 출원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생활의 근거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토지나 공장등의 주요 설비가 당해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만 함.

- 입증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관공서의 확인서 등이 있음

○ 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서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출원인의 적격 등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의견제출통지를 한다.

【실제 심사에서의 거절이유통지 사례】

○ 보성녹차(출원번호 제44-2005-5호, 제44-2006-1호) : 출원인이 각각 보성차생산자협회와 보성녹차연합회로 소속단체원을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함.

○ 공주알밤(출원번호 제44-2006-15호) : 법인등기부등본 미 제출

4. 정관 및 정관요약서 심사

가. 정관 및 정관요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 정관 및 정관요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중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부합되는 지 등을 확인

○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정관의 내용과 입증서류와 불일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적용

※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 필수기재사항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6.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7.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지도포함)
8.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실제 심사에서의 거절이유통지 사례】

○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정관요약서에서 누락 : 이천한우(제44-2006-5호), 서산육쪽마늘(제44-2006-18호)

○ 상기 필수기재사항 중 5. 6. 7. 8.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첨부물로 제출한 사례(일반적으로 정관의 부속서에 정함) : 화천화악산토마토(제44-2006-14호), 공주알밤(제44-2006-15호), 청송사과(제44-2007-2호), 원주옻(제44-2007-3호), 안흥찐빵(제44-2007-7호)

○ 상기 필수기재사항 중 5. 6. 7. 8.을 정관에 부속서의 형태로 기재하였으나 부속서가 정관의 일부이며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정관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 : 순창고추장(제44-2006-7호), 고창복분자주(제44-2006-9호)

나. 정관 및 정관요약서 일치여부 확인

○ 정관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출원인이 출원시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할 수 있으므로 정관요약서는 그러한 누락이 없도록 재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심사관이 심사시 해당사항에 대한 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며, 정관의 요약서를 상표출원 공고시에 일반에 공고토록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인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따라서 각 기재사항별로 정관요약서에 정관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고 내용상 정관과 일치하는 지를 면면히 확인하여야 함.

○ 정관 및 정관요약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3조제1항제6호를 적용

【실제 심사에서의 거절이유통지 사례】

○ 정관요약서의 기재사항 항목에 정관의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화천화악산토마토(제44-2006-14호),청송사과(제44-2007-2호), 원주옻(제44-2007-3호), 안흥찐빵(제44-2007-7호)

○ 정관과 정관요약서상의 조합원의 자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인제용대황태(제44-2006-3호)

○ 정관과 정관요약서의 상품 기재가 다른 경우 : 이천한우(제44-2006-5호)

다. 정관상 단체원의 가입자격 심사

○ 해당지역의 정당한 업자에 대하여 정관상 단체가입을 금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거절하여야 한다.(상표법제23조제1항제5호)

○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리적표시의 특성상 해당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모든 자에게 그 사용이 개방

되어야 하기 때문에

- 해당 가입규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한 경우, 단체의 가입조건 등이 사회통념상 내용적·절차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임.

○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적용

【실제 심사에서의 거절이유통지 사례】

○ 보성녹차(제44-2006-1호) : 보성군에서 제조면허를 취득한 영농법인→이 경우 개인농민과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임

○ 진도홍주(제44-2006-2호) : 회원의 자격요건이 불명확→진도군지역에서 주류제조면호를 취득한 자나 단체로서 진도홍주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인제용대황태(제44-2006-3호) : 인제군에서 황태를 생산, 가공하는 자→개인 및 법인조합원의 자격을 '용대리'에 주소지, 생활근거지, 또는 주요시설이 있는 자로 규정해야 함.

○ 이천한우(제44-2006-5호) : 회원의 자격요건이 불명확→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회원의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산 모시(제44-2006-8호) : 정회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준회원은 회장의 승인). →가입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음

○ 고창 복분자주(제44-2006-9호) : 총회에서 가입을 결정한다 및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가입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음

○ 공주알밤(제44-2006-15호): 1ha이상의 밤나무 재배농장, 년간 판매액 300만원이상 →가입조건을 지나치게 제한

○ 청송사과(제44-2007-2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0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과수농업종사자 → 가입조건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제한

5. 표장의 심사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로고·도형 또는 출원인의 명칭을 포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는 제외)

- 지리적 명칭이 아닌 비지리적 명칭(에펠탑)이나 엠블렘(에펠탑의 형상)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지리적 명칭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경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표장이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표장

○ 다음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표장으로 보아 의견제출통지를 한다.

-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는 경우

- 표장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수식 또는 한정하거나 별도의 식별력을 가진 문자를 결합한 경우

-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로고 등을 결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부분이 과도하게 약화되거나 희석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개 이상의 시·군명을 결합하가나 광역시·도명 또는 시·군명과 읍·

면·동명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경우(다만 전통적으로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들에게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겨우를 제외한다)

○ 지리적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보정하는 내용의 상표보정은 심사기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36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요지변경으로 본다.

6. 지정상품의 심사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이 경우에도 포괄명칭이나 불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해서는 1상표1출원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포괄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고 현실적으로도 포괄명칭으로 널리 상용되는 경우

- 원재료 상품 및 그 원재료 상품의 주원료가 되는 것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복수의 가공품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의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을 갖고 있어서 개별 지정상품별로 각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하여야 한다.

【실제 심사에서의 거절이유통지 사례】

○ 보성녹차(제44-2005-5호) : 녹차음료 →녹차음료는 녹차를 주원료로 하더라도 상품전체에 대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안밤(제44-2007-1호) : 밤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신선한 밤과 냉동밤으로 구분해야함.

○ 청송사과(제44-2007-2호) : 사과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신선한 사과와 냉동사과로 구분해야함.

7.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심사

가.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심사

○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개재내용의 신뢰성여부를 판단한 다음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의 기재내용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대학 등의 학술기관·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 등의 자료

- 관련 분야에 대한 석·박사 등의 논문이나 전문분야의 교과서나 잡지 등에 게재된 자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또는 업무관련 자료나 연구용역보고서 등의 자료

- 주요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자료로서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의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 기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이 동종 상품 일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지역의 동종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대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자타상품 식별력(특별현저성)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상품의 명성에 관한 심사

○ 상품의 명성에 대한 심사는 상품의 유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증빙자료,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등의 자료 및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주지상품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 명성 입증자료

○ 역사성을 입증하는 자료

- 지리적 표시 대상상품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문헌의 기록을 인용하여 지리적 표시 대상상품이 역사적으로 명성을 지니게 된 과정

-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명성을 입증하였는가에 관한 기록

○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실태

- 해당상품의 전국적인 생산실태 및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점유율 등을 연대별로 제시하여 대상지역이 주산지로서 명성이 있음을 설명

○ 국내·외 인지도(유명성)

- 해당상품의 유명성과 관련된 연구발표 자료, 소비자 인지도 조사자료, 수출실적(계약실적 포함) 등을 이용하여 해당 품목이 명성이 있음을 설명

○ 언론 보도사례

- 보도된 횟수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며, 지리적 표시 대상품목의 명성과 관련된 보도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가장 오래된 것부터 최근의 보도자

료까지의 사이에 해당품목의 명성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단절이 없음을 확인

○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은 자연히 명성을 수반하고, 명성은 또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주로 기인하므로,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와 명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는 함께 제출되고 함께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해당지역에 고유한 전통적인 생산비법이나 특유의 가공방법, 포장방법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요소로 한다.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지리적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에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자료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자료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일교차가 커서 품질이 좋다”라는 식의 설명이 아니라 “일교차가 해당상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왜 품질이 좋아지는 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아울러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인용자료도 같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사회경험칙 상 자연적 요소나 인적요소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인이 없으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가 성립될 경우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간에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9.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따라 일정지역으로 구획하여 표시한 것을 말하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의 기재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그 대상지역을 정확히 포시한 지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구역내의 일부로 한정되거나 해당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이 해당 지리적 표시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속하는 행정구역보다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의 단체가입을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 심사에서의 거절이유통지 사례】

○ 보성녹차(제44-2005-5호) : 대상지역은 규정되어 있으나 지도 미 첨부

○ 진도홍주(제44-2006-2호) : “행정구역상 전남 진도군”으로 되어 있으나 범위를 적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없음(전남 진도군은 230여개의 유무인도로 구성). 지도 미 첨부

10.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

○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앞서 언급한 개별사항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현황
-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

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관단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 시 필요한 단체구성, 정관작성,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조정 또는 합의도출을 위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등과의 협의·자문 또는 조정 등을 위해 추진한 사항 및 노력의 정도

○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함께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하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 및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현황 및 관련 참고자료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현황

(2007.10.30현재)

연번	출원번호 (출원일자)	표장	상품류 및 지정상품	출원인 (대리인)	비고
1	44-2005-3 (2005.7.1)	남한강	29류:양념,갓김치,깍두기,돗나물,동치미(외)	(충주시)살미농협협동조합	거절결정
2	44-2005-4 (2005.7.1)	남한강	30류:깨소금,겨자가루,계피가루,고춧가루(외)	(충주시)살미농협협동조합	거절결정
3	44-2005-5 (2005.9.16)	보성녹차	30류:녹차,잎녹차,녹차티백,녹차음료	영농조합법인 보성차생산자협의회	거절결정
4	44-2005-6 (2005.10.31)	장흥 표고버섯	29류:냉동 표고버섯,건조된 표고버섯 31류: 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등록 (1호)
5	44-2006-1 (2006.1.11)	보성녹차	30류:녹차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거절결정
6	44-2006-2 (2006.2.24)	진도홍주	33류:홍주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	등록 (4호)
7	44-2006-3 (2006.2.28)	인제용대황태	29류: 황태	영어조합법인 인제용대황태	심사보류
8	44-2006-4 (2006.4.11)	고흥유자	31류:유자	고흥유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등록 (2호)
9	44-2006-5 (2006.4.25)	이천한우	29류:소고기	사단법인 이천한우회	등록 (5호)
10	44-2006-6 (2006.5.29)	양양송이	29류:송이 31류:송이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등록 (3호)
11	44-2006-7 (2006.6.5)	순창고추장 SunChang Kochujang	30류:고추장	영농조합법인 순창장류연합회	등록 (10호)

12	44-2006-8 (2006.6.19)	한산 모시	24류:모시직물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등록 (8호)
13	44-2006-9 (2006.6.29)	고창 복분자주	33류: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 고창으뜸복분자주	등록 (9호)
14	44-2006-10 (2006.8.29)	경산대추	29류 : 대추	영농조합법인 경산대추생산자단 체협의회	등록 (6호)
15	44-2006-11 (2006.8.29)	경산대추	31류 : 대추	영농조합법인 경산대추생산자단 체협의회	등록 (7호)
16	44-2006-13 (2006.12.6)	이천도자기	21류 : 도자기,백자기, 청자기,도자기제,(외)	이천도자기사업협 동조합	등록 (11호)
17	44-2006-14 (2006.12.21)	화천화악산토마토	31류 : 토마토	화천화악산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심사중
18	44-2006-15 (2006.12.22)	공주 알밤	31류 : 밤	공주알밤재배자 영농조합법인	심사중
19	44-2006-17 (2006.12.27)	충주사과	31루 : 사과	충주사과생산자단 체협의회영농조합 법인	거절결정
20	44-2006-18 (2006.12.29)	서산6쪽마늘	31류 : 마늘	서산마늘생산자단 체협의회영농조합 법인	심사중
21	44-2007-1 (2007.1.5)	정안밤	31류 : 밤	정안밤생산자영농 조합법인	심사중
22	44-2007-2 (2007.1.5)	청송사과	31류 : 사과	청송사과영농조합 법인	심사중
23	44-2007-3 (2007.1.26)	원주옻	2류 : 흑색옻,니스용옻, 생칠옻, 정제옻	원주옻 영농조합법인	심사중
24	44-2007-4 (2007.2.12)	PROSCIUTTO DI PARMA	29류 : 햄	콘소리즈오 델 프로슈또 디 빠르마(이탈리아)	심사중
25	44-2007-5 (2007.2.14)	곡성멜론	31류 : 멜론	곡성효멜론 영농조합법인	심사중
26	44-2007-6 (2007.2.20)	제주 돼지고기	29류 : 돼지고기	사단법인 제주도수출육가공 협의회	심사중
27	44-2007-7 (2007.2.21)	안흥찐빵	30류 : 찐빵	농업회사법인 안흥명품합명회사	심사중

28	44-2007-8 (2007.3.13)	보성삼베	24류 : 대마직물, 삼베직물	보성전삼베영농조 합법인	심사대기
29	44-2007-9 (2007.3.15)	남원목기	21류 제기외 다수	남원목기사 협동조합	심사대기
30	44-2007-10 (2007.5.15)	한산모시	24류 : 모시직물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심사대기
31	44-2007-11 (2007.6.4)	거창사과	31류 : 사과(신선한 것)	거창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
32	44-2007-12 (2007.6.5)	영덕대게	31류 : 살아있는 대게	영덕대게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
33	44-2007-13 (2007.6.5)	BRUNELLO DI MONTALCINO	33류 : 포도주	콘조르지오 델 비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심사대기
34	44-2007-14 (2007.6.14)	구례산수유	31류 : 산수유	구례산수유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
35	44-2007-15 (2007.6.14)	창녕양파	29류 : 냉동양파, 보존처리된 양파 31류 : 신선한 양파	창녕명품양파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
36	44-2007-18 (2007.7.4)	부여세도 방울토마토	31류 : 방울토마토	세도토마토생산자 단체연합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
37	44-2007-19 (2007.7.11)	상주곶감	29류 : 건시(곶감)	상주곶감발전연합 회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
38	44-2007-20 (2007.7.27)	고흥유자차	29류 : 유자청 30류 : 유자차	고흥유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
39	44-2007-21 (2007.8.30)	강진청자	21류 : 청자	강진청자협동조합	심사대기
40	44-2007-23 (2007.9.11)	압촌메주	30류 : 메주	대촌빛고을전통 메주 영농조합	심사대기
41	44-2007-24 (2007.9.18)	함안수박 Haman Watermelon	31류 : 수박{신선한 것}	함안수박영농조합 법인	심사대기
42	44-2007-25 (2007.9.20)	군산흰찰쌀보리	30류 : 흰찰쌀보리 (탈곡한 것)	사단법인 군산흰찰쌀보리 생산자협회	심사대기
43	44-2007-26 (2007.9.21)	남해 죽방렴 멸치	29류 :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	심사대기
44	44-2007-27 (2007.10. 9)	산동산약 마	31류 : 산약	사단법인 안동 산약(마)연합회	심사대기

2. 표준정관 및 부속서 예시

가. 표준정관[1] 예시

OOOO(지리적표시상품)생산자[2]영농조합법인[3]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OOOO(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 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OO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OOOO의 자율적 생산(제조 또는 가공), 품질향상, 출하조절 및 공동판매 촉진 활동을 기하고, 상표법(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관리를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OO지역의 OO산업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OO도 O군 O읍 O리 OO-O 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OO상품의 생산·출하 조절 및 판매·수출 등의 사업
   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신문 · 잡지 · TV ·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 전단 제작 · 배포, 전시회 · 품평회 · 직거래행사 등 이벤트 개최)

---

1) 농림부 고시 제2004-43호(2004.7.12)의 "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을 기준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추가할 사항을 포함하는 형태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정관의 작성시에는 동고시의 내용을 직접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상품에 따라 '제조자', '가공자', '생산·가공자' 또는 '제조·가공자' 등으로 표시 가능

3) 영어조합법인, 조합법인, 조합 ,연합회, 협의회 등으로 표시 가능

나. 판로 ·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시장 조사
다. 생산 · 선별 · 건조 · 저장 · 포장 등을 위한 공동 작업장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라.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생산 · 출하 조절, 공동출하, 유통개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한 농자재 구입 및 포장재 조제 보급
바. OOOO 상품 보호를 위한 원산지 관리
사.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 조사, 영농기술 연구 개발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상품에 관한 사업
가.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출하조절·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지리적 표시 상품의 자체품질기준 설정 및 품질관리
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바. 지리적 표시 해당 지역 특산품에 관한 사업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
가. 전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 사업
나. OO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제5조(공고방법) ① 법인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 합 원

제7조(조합원의 구분) 법인의 조합원은 개인조합원과 단체조합원으로 구분

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인의 개인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OO군 지역에서 OO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의 단체조합원이 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는 OO군 관내에 있는 OO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제9조(가입) ① 법인에 개인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이 법인에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 관계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영농규모(재배면적, 생산량,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 일수

② 법인에 단체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가입신청서와 등기부등본을 이 법인에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0조(권리) 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2.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3. 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법인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5. 법인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할 권리
6. 법인이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②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1조(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정관 및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법인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4. 법인의 운영을 위한 부담금 납부 의무
5. 법인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6. 법인의 사업 및 의결사항을 단체조합원의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이의 실행을 지도·지원할 의무
7.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및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2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3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3조(제명)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

회의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단체조합원의 구성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인을 빙자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기타 조합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자에게는 총회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4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해 환가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합법인 총 출자좌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말에 증좌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전출자) 조합원은 매 회계연도의 법인의 잉여금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부담) ① 법인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

한다.

제18조(법정적립금) 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20조(자본적립금) 법인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자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은 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은 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2조(지분계산) 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사업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법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법인의 가입승낙은 제9조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 양수 및 공유 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그 지분을 양도 · 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탈퇴 · 제명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으로 환불한다.
② 탈퇴 또는 제명 된 조합원이 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 4 장 임 원

제27조(임원의 수)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 사 5인 이상
3. 감 사 1인 이상

제2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9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 승낙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의 부의할 안건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관리, 해당 상품의 사용실태· 품질조사 및 사후조치.개선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37조(자문위원) ① 법인은 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OO군수 · OO군의회의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OO출장소장 · OO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협중앙회OO군지부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의 운영

제38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 총회의 소집통지는 총회소집 7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조합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4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 수지예산의 책정·변경 및 결산의 승인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및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
8. 잉여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9. 해산
10. 기타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선출은 다수결로 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42조(총회의 특별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조합원의 제명
4. 해산

제43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제9조 제1항의 개인조합원의 경우 동일세대에 속한 성년이어야 하며, 제9조 제2항의 단체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원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의시작 전까지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사록의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5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5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6 장 회 계

제4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47조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①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운영경비) ①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납입한 제 경비 및 제 부담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 제 수입금으로 한다.
② 법인의 제 경비는 제1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9조(자금 관리) 법인의 여유자금은 농업협동조합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0조(경리공개) 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51조(수익배분 순위) 법인의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 부대비용
3.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4. 이월결손금 보전

제52조(잉여금의 처분) ① 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잉여금의 총액을 전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한다.

제53조(손실금 처리) 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제 7 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제54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법인 및 소속단체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동 단체표장의 사용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등에 대한 사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생산계획) ① 지리적 표시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개인조합원은 당해연도 생산계획을 매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조합원은 소속 구성원의 생산계획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생산 계획량
2. 등급별(특 · 상 · 보통) 생산 계획량

제55조(품질관리) ①조합원 및 단체조합원 소속 생산(제조 또는 가공)자는 지리적 표시 상품의 품질적 특성의 유지를 위한 '자체관리기준'과 '유지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OO상품의 특정품질 또는 명성, 이러한 특성 등과 연관된 OO지역의 지리적 환경요인,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품질 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품질 등의 유지관리방안은 본 정관의 부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부속서는 정관의 일부로 보며,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6조(협조) ① 대표이사는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단체조합원에 대하여 소속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 품질검사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단체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개인조합원에 준용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57조(사무국 등) ①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무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두며, 필요시 단체조합원의 직원에게 업무를 위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58조(서류비치 의무) 대표이사는 정관 및 제 규정과 조합원명부, 재산목록,총회 · 이사회 · 자문위원회의 의사록 및 회계장부와 지리적특산품 관련 서류를 사무국에 비치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59조(해산)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원 중 1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청산 재산의 처리)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며, 발기인이 기명날인 한다.

2005. O . O .

OOOO 영농조합법인

발기인 홍 길 동 (인)
xxxxxx - xxxxxxx
oo도 oo군 oo읍 oo리 ooo
.....

나. 정관의 부속서 예시

지리적표시해당상품의특성및품질등의자체관리기준등에관한부속서[4)]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OO상품의 특정품질 또는 명성, 이러한 특성 등과 연관된 OO지역의 지리적 환경요인,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품질 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품질 등의 유지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1)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 보성 녹차는 총질소와 총아미노산 함량이 낮아 맛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음용후 감칠 맛이나고 탄닌 함량이 적당하여 떫고 쓴맛 등 5미가 분명하다. 또한 향과 맛이 독특하며 수색이 맑아 음다의 욕구를 촉진시켜주며 다음에 다시 찾게 되는 것이 특징임

○ 득량만과 보성강에서 일어나는 안개를 먹고 자란 부드럽고 살찐 햇차의 어린잎(雀舌크기)을 손으로 채취한 후 빠른 시간 내에 덖음 또는 증열처리를 하여 발효를 정지시킨 후 유념하는 등 보성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거침으로서 독특한 맛, 향 등이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보성녹차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고품질 녹차로 평가받고 있음

(1) 품종(종자) 특성

○ 보성 지방에 자라고 있는 차는 일본차나 중국차에 비해 기(氣)가 풍부하며 이 지역의 기후풍토에 수백년 동안 적응하여온 재래종으로서 특이한 향과, 맛 을 갖고 있으며 여러 잡종 집단이 되어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

(2) 경작과정상의 특징

○ 보성강과 득량만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다원이 형성되어있

4) 정관에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목적상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받은 국내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인 「보성녹차」의 특성등에 관한 내용을 “지리적표시 등록업무 추진 백서- 보성녹차 등록사례를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2002.5)”에서 발췌하여 수록하면서 일부 소제목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책자를 직접 참조하기 바람.

어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아 고품질 차를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

- ○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고급차 생산시기인 4월중 온도가 타 지역보다 0.7~2.4℃ 높아 차의 생장이 빠르며 차의 생장에 최적 조건을 이루고 있음
- ○ 토양은 미량요소가 풍부하며 수확 후 영양소의 공급을 위해 매년 봄, 가을에 유기물인 퇴비위주로 시용하고 있으며, 기후와 토양 여건이 차의 주산지의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최상의 품질을 자연이 제공해 주고있음

(2) 가공과정의 특성

(1) 우전(雨前茶), 곡우(穀雨茶), 세작(細雀)

- ○ 이른봄 첫 싹이 처음 나오는 4월에 어린잎이 1심 2엽이 되면 손으로 새순을 채취한다(곡우이전(우전)과 곡우무렵(곡우)). 새순채취 기간은 채취 시작일부터 5~7일에 한정
- ○ 세작은 약간 뒤인 4월하순~5월 초순까지 새순이 1심 2엽인 새잎을 손으로 채취하며 새순채취기간은 10일이내
- ○ 수확후 빠른 시간 내에 덖음 또는 증열 처리로 발효를 중지시키고 유념작업을 7~8회 반복하여 수분이 5%정도 되도록 건조하여 보관하였다가 출고직전 가향(加香)처리 과정을 거쳐서 녹차 특유의 5미(쓰고, 떫고, 시고, 달고, 짠맛)를 갖는 상품을 생산

(2) 중작

- ○ 상품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우전, 곡우, 세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3) 대작

- ○ 중작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중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3) 역사적 명성

○ 우리나라에 차가 자라고있는 곳은 총 261개소이며 그중 전라도 지방에는 235개소가 자생되고있으며 복홀군(伏忽郡)이 마한에서 백제로 통합(근초고왕(369년경)되면서 처음으로 차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기록

※ 별첨자료 있음 : (1) - 가1 ~ 가6

○ 동국여지승람(1478年)보성군편(卷47,705面)土産品으로 茶生産

※ 별첨자료 있음 : (1) - 나1 ~ 나6

○ 山陽誌(숭정기원후재신유:1741년2月刊行)에 茶가 土産品으로 記錄, 1478年이전부터 茶가 생산되고 있다고 기록

※ 별첨자료 있음 : (1) - 다1 ~ 다3

○ "다향 보성" 의 탑(탑의사진 첨부)

목포-부산간 국도 2호선 변 소공원에 세워진 탑, 비문에 수백년 전부터 차를 생산하여 왕실에 진상하기도 하였거니와 세금으로 차를 현물로 납세 하였다고 기록

※ 별첨자료 있음 : (1) - 라1 ~ 라5

○ 보성군사(1995년 발행)

"차문화의 중흥과 보성(제5장)" 수백년 전부터 차를 재배하여 오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 1960년부터 확대 재배로 매년 재배면적의 증가와 생산량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기록

※ 별첨자료 있음 : (1) - 마1 ~ 마15

(4) 국내외 인지도

○ 1985년부터 매년 5월중에 실시하는 보성의 차를 알리는 "보성다향제"는 전국규모의 차 문화 행사로서 전국 각지의 차 애호가들이 참관하고, 최고의 품질의 차를 만드는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차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다향 보성으로서 명실 상부한 한국 최고의 차의 자리 차지

※ 별첨자료 있음 : (2) - 1

(5) 수상경력 주요 언론보도

(1) 수상경력

○ 2000년 6월 한·중·일 공동 주최하고 중국에서 주관하는 제2회국제명차 평심위

원에서 주최한 국제 차박람교역회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관내 보성제다에서 출품하여 차 영예상을 받은 바 있으며, 1991년부터 매년 11월에 열리는 전국 농수특산물 경진대회에서 매년 출품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별첨자료 있음 : (3) - 가1~ 가2

(2) 언론보도

○ 신문분야

국내 중요 일간신문, 조선, 동아, 대한, 중앙, 경향, 한겨레, 스포츠 관련신문 등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물론 주간, 월간 신문잡지 등 수 많은 보도가 되었음

※ 별첨자료 있음 : (3) 신문분야 1 - 35

○ T.V분야

KBS 뉴스와 6시내고향, 생방송 오늘, 맛자랑 멋자랑, MBC 뉴스 생방송 모닝 스페셜, 고향은지금, SBS 뉴스, 생방송 모닝와이드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성녹차의 우수성이 보도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1) 대상지역의 행정구역

○ 동경 127.10도 북위 34.5도를 중심으로 면적은 662.29㎢의 보성군 일원으로 한다. 남쪽은 해안선인 득량만과 순천만 일부를 경계로 한 회천면 일대와 제암산 주변, 보성읍을 중심으로 보성강이 흘러 주암호에 이르는 주변지역, 존재산 아래 징광계곡을 대상지역으로 함

(2) 지리적 기상특성

○ 이 지역은 년 평균기온은 13.4℃이고 강우량도 1,459㎜로서 차나무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다.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1,310mm의 많은 비가 내려 차의 생육을 좋게 해줌

<표 1> 차 재배 지역별 온도 분포

월 / 지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기온
광 주	−0.6	1.1	5.7	11.4	16.8	21.4	25.6	26.1	20.9	14.0	8.2	2.4	12.8
보 성	0.4	1.5	5.2	13.6	17.8	21.2	24.8	25.8	21.4	15.1	8.1	2.3	13.4
강 진	0.5	1.8	5.6	12.4	17.1	21.4	23.8	26.4	21.2	14.6	8.4	2.4	12.9
광 양	0.5	1.8	6.6	12.9	18.1	21.6	24.7	26.3	21.2	15.5	4.3	2.0	13.0
구 례	−0.1	1.7	6.5	12.9	17.6	22.0	25.3	25.8	20.8	14.5	7.5	2.1	13.0
하 동	−0.4	1.0	4.8	11.2	17.2	21.8	24.9	25.6	20.8	15.8	10.0	3.2	15.9
서귀포	6.0	6.6	9.7	14.0	17.9	20.9	25.1	26.7	23.2	18.5	13.4	8.4	15.9

<표 2> 차 재배 지역별 강우량 분포

월 / 지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광 주		31.5	34.4	69.1	82.1	92.0	168.8	222.6	201.2	189.5	51.9	42.9	56.8	1,222
전남	보성	13.5	58.2	70.0	184.0	138.3	273.1	218.7	254.9	125.9	45.4	42.7	35.0	1,459
	강진	34.0	32.8	71.2	164.2	101.2	254.2	204.8	232.1	135.4	47.0	45.4	36.2	1,227
	구례	30.5	37.7	62.2	97.5	96.7	205.2	320.4	264.0	134.8	50.7	48.3	25.8	1,374
서귀포		57.8	77.2	108.0	188.7	205.9	282.3	282.6	216.5	160.9	71.3	78.4	41.8	1,776
경남 하동		49.2	55.6	73.1	158.4	108.1	188.0	201.8	226.4	120.0	87.5	48.6	42.0	1,358

(3) 토양특성

○ 토양은 사양토로 많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되며 바다와 강이 인접해있어 온도가 따뜻하고 안개 일수가 많아 차나무 성장기에 많은 수분을 공급하는 한편 그늘을 마련하여 주어 차의 맛을 좋게하는 천혜의 특징을 갖고 있음

(4)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 토양 : 사양토로서 맥반석 지대의 토양으로 토심이 깊음

○ 기후 : 바다와 호수가 인접해있어 차나무 성장에 가장 적합한 기온, 강우량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지형 : 차가 자생되는 곳은 대부분 남향이며 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특히 계곡이 많으며 주변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분지 형태를 이루고있어 사계절의 한계가 뚜렷하며 일중 온도 교차가 많은 것이 특징임

○ 호수, 바다 : 북쪽으로는 보성강과 주암호로 둘러 싸고있어 내륙성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득량만, 순천만의 해양성 기후가 받혀

주고 있어 연중 안개 일수가 많아 차 맛이 독특함

○ 차의 최상품의 품질을 유도해 주는 기후, 토양, 지형, 호수, 바다 등이 잘 어울려져 최고급 차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천혜의 고장임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가. 지리적표시 지역의 대상범위는 행정구역상 보성군으로 한다.

※ 보성군 관내 차 재배 및 생산 현황

년도	제다업체의 수	재배농가	재배면적	년간 생산량
1996	8	80 호	291 ha	436.5 톤
1997	8	85	311	466.5
1998	11	125	358	537.0
1999	13	137	392	588.0
2000	16	158	425	637.5

나. 대상지역의 표시

※ 별첨 보성군 지도 1/50,000 지도에 차밭을 표시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자체 관리기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차나무(Camellia sinensis var sinensis)의 어린잎과 순을 원료로 하여 열처리, 방냉, 비비기,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포장된 제품으로써 침출후 음용되는 녹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뜻

2.1 방습포장 : 다관을 이용하여 침출시켜 음용하는 녹차에 있어서, 고유의 형태를 유지한 녹차를 방습성이 우수한 포장재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2.2 비비기 : 원료의 열처리 이후에 행하여지는 공정으로서, 멍석을 이용한 수작업 또는 유념기 등을 이용한 비비기에 의하여 개개의 어린 차잎 및 순은 활모양, 말굽모양 등으로 말린 일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며, 과숙한 차잎은 성형되지 못하고 부서지게 된다.

2.3 덖음차 : 가마솥 또는 회전솥 등에서 덖는 것에 의하여 원료 차잎의 효소작용을 억제한 후 비벼서 제조한 녹차를 말한다.

2.4 찐차 : 뜨거운 증기에 노출시켜서 원료 차잎의 효소작용을 억제한 후 비벼서 제조한 녹차를 말한다.

2.5 줄기 및 협잡물 : 차잎 채취시 혼입된 성숙한 줄기, 씨앗, 성숙해서 비벼지지 않은 차잎 및 차나무 유래가 아닌 다른 물질 등 녹차의 원료로 이용될 수 없는 성분을 말한다.

2.6 분말 : 차잎 및 순이 미세하게 파쇄된 것으로, 침출시 침출액중에 현탁되어 차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입자를 말한다.

2.8 황엽 : 노화엽 및 병들어 황색으로 변색된 차잎을 말한다.

3. 종류

3.1 방습포장 녹차

3.1.1 덖음차 : 특급(우전, 곡우, 세작)

3.1.2 찐차 : 특급(우전, 곡우, 세작)

4. 품질

4.1 품질기준

4.1.1 다음 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품질 기준표

항 목	기 준		
	특 급	고 급	중 급
관능품위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분말(%)	2.5이하	2.5이하	2.5이하
줄기 및 협잡물(%)	3.0이하		
수분(%)	6.0이하		
회분(건물%)	5.5이상	4.5이상	4.5미만

비고 : 1. 회분은 최고 6.0%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차 생산을 위하여 총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나, 맛이 느끼하지 않도록 총질소함량이 높지 않아야 한다.

4.1.2 표1이외의 위생 요구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4.2 등급기준

4.1.1 차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품명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우전, 곡우, 세작급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한다.

<표 2> 관능품위 기준

대상	항목	채점기준
건조차잎(제품)	형태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매우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거의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대체로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있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약간 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지않았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많은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극히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전혀 유지되지 않았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매우 많고 이물이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색택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선명하며, 색택이 균일하고 윤기를 가진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비교적 선명하며 색택이 대체로 균일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포함된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매우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많이 포함된 것은 1점으로 한다.
열수추출물	수색	○ 수색이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거의 없어서 매우 맑은 것은 5점으로 한다 ○ 수색이 비교적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약간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많아서 탁한 것은 2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매우 많아서 몹시 탁한 것은 1점으로 한다
	향미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양호하고 향기가 매우 신선하며 이미·이취가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비교적 양호하고 향기가 신선하며 이미·이취가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부족하며 떫은 맛이 강하고 이미, 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 떫은 맛과 이미·이취가 강한 것은 1점으로 한다.

5. 시험방법 : 품질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시험방법 규정에 따른다.

6. 제조·가공기준

6.1 공장입지

6.1.1 주변환경이 제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6.1.2 공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6.2 작업장

6.2.1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작업에 지장이 없는 넓이 및 밝기를 갖추어야 한다.

6.2.2.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이어야 하며 원료처리장 및 내포장실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내수성자재로 설비하거나 방균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6.2.3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성자재를 이용하여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6.2.4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창문을 갖추거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창문, 출입구 기타의 개방된 장소에는 쥐 또는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6.2.5 원재료, 기구 및 용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 및 청결한 물을 충분히 급수 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3 보관시설 : 보관시설은 원·부자재 및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고, 내구력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6.3.1. 원·부자재의 보관시설 : 원·부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이 가능한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보관중 변질되지 않고 먼지 등의 이물이 부착 또는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6.3.2 제품보관시설 : 제품 보관중 품질의 변화를 막기 위하여 고온다습하지 않아야 한다.

6.4 제조설비 : 제조과공중 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방지하이 위하여 항상 세척 및 점검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주요 기계, 기구 및 설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제조설비 사항

(1) 열처리 설비 (2) 비빔설비 (3) 방냉설비 (4) 건조설비 (5) 포장설비

비고 : 기능의 특수성에 의하여 제조설비를 증감 할 수 있다.

6.5 자재기준

6.5.1 원자재

(1) 원료 생엽은 전남 보성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할 원료 차 잎의 채취시기 및 크기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우전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 잎으로 우전차 고유의 잎 크기(1.5~2.0㎝)인 1심2엽을 사용한다.

(나) 곡우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 잎으로 곡우차 고유의 잎 크기(2.0~2.5㎝) 이내의 1심2엽을 사용한다.

(다) 세작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 잎으로 세작 고유의 잎 크기(2.5~3.0㎝) 이내의 1심3엽을 사용한다.

(3) 원료 차 잎의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 차 잎을 생산하기 위하여 잘 부숙된 유기질 퇴비를 년간 ha당 20톤 이상을 사용하여 토양관리를 하되, 토양염류 집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방제는 환경친화적인 방법 성페르몬, 유아등, 끈끈이트랩 등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우수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차 밭 ha당 우전, 곡우, 세작의 최대채취량은 보성지역 평년작 평균 단수를 적용하여 년간 300kg을 초과할 수 없다.

6.5.2 용수 :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 적합 시험을 받아야 한다.

6.6 주요 공정기준

6.6.1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녹차의 원료는 차나무의 어린잎과 순으로 한정하며, 신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6.2 채취한 원료는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열처리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야한다.

6.6.3 원료의 열처리는 고유의 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6.6.4 비비기에 사용되는 설비는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6.5 가공공정을 통하여 이물 및 과숙한 차잎을 제거하여야 하며, 가공 전과정에

서 이물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6.6 녹차의 포장재는 적절한 차광성 및 방습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6.6.7 기타 주요 공정은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의 수를 증감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공정에 대한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유지관리방안

(1) 목 적

○ 이 품질관리 계획서는 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품인 보성녹차의 명성·품질·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품의 관리를 통한 보성녹차의 명성 및 품질을 보호함과 아울러 판매를 촉진하여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자의 소득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질조사계획의 수립

○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 이전에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품(이하 “등록품” 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조사 대상제품에 대한 수확시기·횟수·성분 등을 조사(이하 “품질조사” 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에서 해당조사를 실시할 경우 품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임 무

(가) 회장

1) 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 수립 및 이사회 상정
2) 관련기관, 회원에게 확정된 품질조사계획 통보
3) 등록품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결과 해당자에 통보
4) 부정 등록품의 조사

(나) 이사회

1) 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의 확정
2) 등록품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 심의
3) 이의신청 심의 및 표시금지자의 재표시 허용여부 심의

4) 조사원의 결정(조사자, 활동기간 등)

(다) 조사원

1) 조사시료의 수거 및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2) 조치결과(표시정지, 표시금지 등) 이행여부 확인

(라) 회원

1) 등록품의 품질기준, 유해물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 준수

2) 등록상품의 명성 가치와 명예의 유지·향상

3) 일자별 채다량, 수매량, 제품생산량 및 등록품 출하·판매량 기록

4) 시료수거·관련장부의 열람 협조

5) 부정 등록품의 감시 및 신고

(4) 분석기관 및 조사대상

(가) 분석기관 : 분석기관은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또는 공공검사 기관을 말한다.

(나)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등록품의 원료나 제품에 한하며, 등록품이 아닌 제품(허위표시품, 유사표시품 등) 등은 분석기관에 시료수거 및 분석을 요청한다.

(5) 조사 기준

(가) 품질기준 : 전통식품표준규격제정·개정{농림부 고시 제1999-02호)의 녹차(규격번호 T024-1995) 기준에 의하되, 본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나) 유해물질기준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관련기준

(다) 등급기준 : 보성에서 생산된 차의 제품중에서 특급에 한하여 정한다. 표시품은 우전, 곡우, 세작으로 하고 그 양은 해당 생산자의 채다(차잎 채취)총량과 제품총량의 10%미만이어야 한다.

1) 우전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2) 곡우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3) 세작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6) 조사 대상

(가) 품질기준 : 관능품위(차의 형태, 색, 수색, 향, 맛 등), 분말도, 줄기 및 협잡물포함정도, 수분함량, 회분 등

(나) 유해물질 기준 : 중금속, 잔류농약, 타르색소 등

(다) 등급기준 : 특급

(7) 품질조사 방법

(가) 생산원료조사

1) 생산전 원료에 대한 사전 조사는 수확전이나 수확 후 또는 제품완성전의 원료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2) 관능품위 조사, 산지 판정, 유해물질 조사 등 필요시 무작위 조사

(나) 저장단계조사

1) 저장단계조사는 제품 생산 후 판매하기 전에 생산·제조·가공업자가 진열·보관·저장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2)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제조회사 또는 단체별로 1회 이상 조사

(다) 유통단계조사

1) 유통단계조사는 도매·소매시장, 기타 유통장소에서 판매(통신판매 등 포함)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2) 제조회사 또는 단체별로 년 1회 이상 조사

(8) 시료의 수거

(가) 관계자입회 : 품질조사, 유해물질조사 및 이의신청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시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제조·가공업자나 판매자 등 이해관계자를 입회토록 한다.

(나) 상호 날인 : 시료는 각 2점을 수거하여 수거자와 입회자가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로 상호 날인한다.

(다) 시료수거용기 : 시료의 수거·수송·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흡습·오염·변질 등이 되지 않도록 시료의 종류·형상·분석목적 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료수거방법 :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한다.

(마) 시료수거량

종류별	계(최소 수거량)	분석의뢰용	연합회보관용
원 료 제 품	100g이상 100g이상(2 포장단위 이상)	50g이상 50g이상	50g이상 50g이상

※ 제품은 포장단위별로 수거하되, 1개체(Box)의 중량이 50g에 미달할 때에는 100g이 될 때까지 포장단위 개체수를 증가한다.

(바) 시료수거 서류작성 :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성녹차 지리적표시품 분석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연합회에 보관하고 1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사) 시료의 분석의뢰 : 수거한 시료에는 수거일시·장소, 수거자 및 입회자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한 후 수거당시의 성상 등이 변화가 적도록 조치하여 수거시점부터 3일 이내에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과정 중에 2차 오염이나 변질, 변패, 파손 등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 시료의 보관 : 회장은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생산·제조·가공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한다. 다만 분석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그 보관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한다.

(9) 품질조사 비용

(가) 품질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비용과 분석비용은 연합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나) 이의신청용, 참고용, 선전용 기타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0) 조사결과 조치

(가) 표시정지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개월~3개월의 표시정지를 명한다

1) 유해물질이 관련규정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조치한다.
2) 표시품의 명예를 경미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3) 표시품의 표시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나) 표시 금지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한 자에게 2년동안 표시를 금지시킨다. 표시금지자가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등록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등록품에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3) 등록품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 등록품의 등급기준에 미달한 경우
5) 해당생산자의 채다총량과 제품총량의 10%이상을 등록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6) 등록품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다) 제품회수, 표시삭제

1) 표시정지나 금지된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
2) 회수가 어려울 때는 이사회의 승인하에 표시사항을 지우거나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판매

(라)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1) 조사내용이나 표시정지 및 금지된 사항 등은 즉시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업자와 농관원에 통보한다.
2)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업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통보를 완결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본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품질관리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의 정관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원 결정, 시료수거, 분석의뢰, 이사회 심의, 이의신청 심사 등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처리되어야 하며, 등록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제도 비교

구 분	개정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목적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도모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우수**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등록대상	**제한없음(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외에도 이천 도자기, 안성 유기, 한산 모시, 강화 화문석등의 수공예품도 보호가능)**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록요건	**① 지리적 표시** **② 단체표장등록요건** - 보통명칭,관용표장이 아닐 것 -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 수요자 기만 우려가 없을 것 등 ***품목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① 농산물 및 그 가공품** **② 지리적 표시** **③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④ 당해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일 것 등
등록효과	**o 단체표장권 효력 발생** - 권리자인 법인은 부당한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적 구제수단 주장 가능 **o 단체표장권 효력의 제한** - 정당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권리 주장 불가능	**o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마크 “ ” 사용 가능** - 등록을 받지 않은 제3자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마크 사용 불가 (허위표시죄로 처벌) **o 제3자가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음**
등록무효 및 취소	**o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 및 취소가능**	**o 직권 취소 가능**
사후 관리	**o 소비자나 단체표장권자에 의한 사후관리** - 권리자의 사후 관리소홀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 제도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므로, 단체표장권자에 의한 관리가 가능 **o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관리** -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 등에 의한 관리가 가능	**o 관계공무원에 의한 조사 가능**

4.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농림부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2007.10.30 현재

등록번호	지리적표시	등록일자	등록권자	비고
1호	보성녹차	2002. 1.25	양양송이영농조합	
2호	하동녹차	2003. 5. 2	영농조합법인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3호	고창복분자주	2004. 1.15	산청군농협협동조합	
4호	서산마늘	2005. 3. 5	서산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5호	영양고춧가루	2005. 3. 5	영양고추영농조합법인	
6호	의성마늘	2005. 7. 18	의성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7호	괴산고추	2005. 8.25	괴산고추영농조합법인	
8호	순창전통고추장	2005.10.14	영농조합법인 순창전통고추장연합회	
9호	괴산고춧가루	2005.11. 7	괴산농업협동조합	
10호	성주참외	2005.12. 1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11호	해남겨울배추	2005.12.26	해남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 영농조합법인	
12호	이천쌀	2005.12.26	이천쌀사랑영농조합법인	
13호	철원쌀	2005.12.26	철원오대쌀생산자 영농조합법인	
14호	고흥유자	2006. 5. 8	고흥유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15호	홍천찰옥수수	2006. 6. 5	홍천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	
16호	강화약쑥	2006. 8. 7	강화군산림조합	
17호	횡성한우고기	2006. 9.11	횡성군축산협동조합	

등록번호	지리적표시	등록일자	등록권자	비고
18호	제주돼지고기	2006. 9.19	사단법인제주 수출육가공협회	
19호	고려홍삼	2006.12. 7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	
20호	고려백삼	2006.12. 7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	
21호	고려태극삼	2006.12. 7	사단법인 고려인삼연합회	
22호	안동포	2006.12. 7	안동포생산자영농조합법인	
23호	충주사과	2006.12.11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24호	밀양얼음골사과	2006.12.29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25호	한산모시	2006.12.29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26호	진도홍주	2007. 1.23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	
27호	정선황기	2007. 1.27	정선황기생산농업인 영농조합법인	
28호	남해마늘	2007. 5. 1	남해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29호	단양마늘	2007. 5. 7	단양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	
30호	창녕양파	2007. 6. 5	창녕명품양파영농조합법인	
31호	무안양파	2007. 7. 2	무안양파영농조합법인	
32호	여주쌀	2007. 7.11	(사)여주쌀생산자협의회	
33호	무안백련차	2007. 7.11	연마을영농조합법인	
34호	청송사과	2007. 8.27	청송사과영농조합법인	
35호	고창복분자	2007. 8.27	고창복분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36호	광양매실	2007. 8.27	광양매실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37호	정선찰옥수수	2007. 8.27	정선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	
38호	진부당귀	2007. 10. 1	진부당귀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5. 산림청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2007.10.30 현재

등록번호	지리적표시	등록일자	등록권자	비고
1호	양양송이	2006. 3.29	양양송이영농조합	
2호	장흥표고버섯	2006. 5.16	영농조합법인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3호	산청곶감	2006. 6. 9	산청군농협협동조합	
4호	정안밤	2006. 9.15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법인	
5호	울릉도삼나물	2006.12.15	울릉농업협동조합	
6호	울릉도미역취	2006.12.15	울릉농업협동조합	
7호	울릉도참고비	2006.12.15	울릉농업협동조합	
8호	울릉도부지갱이	2006.12.15	울릉농업협동조합	
9호	경산대추	2007. 1. 3	경산대추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10호	봉화송이	2007. 1. 3	봉화군산림조합	
11호	청양구기자	2007. 2. 8	청양구기자생산자 영농조합법인	
12호	상주곶감	2007. 6.11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영농조합법인	
13호	창선고사리	2007. 8. 7	남해창선농협협동조합	

제5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관련 법규

1. 상표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규정

[상표법]

第 1 章 總 則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2.29, 1997.8.22, 2004.12.31>

1.~2.(생략)

3.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6.(생략)

② (생략)

③ 서비스標·團體標章 및 業務標章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法중 商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제3조의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第 2 章　商標登錄要件 및 商標登錄出願

第6條 (商標登錄의 요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商標를 제외하고는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7.8.22>

1.~6.(생략)

② (생략)

③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2.31>

第7條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商標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6.(생략)

7.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商標權이 消滅한 날(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은 경우에는 審決確定日을 말한다)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他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他人의 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11.(생략)

11. 商品의 品質을 誤認하게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염려가 있는 商標

12.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부당한 利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 特定人에게 損害를 가하려고 하는 등 不正한 目的을 가지고 사용하는 商標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立體

的 形狀만으로 된 商標

14. 世界貿易機構 회원국내의 葡萄酒 및 蒸溜酒의 産地에 관한 地理的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標로서 葡萄酒·蒸溜酒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고자 하는 商標.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생략)

⑤제7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12호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商標權者 및 그 商標를 사용한 者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에 한한다)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存續期間의 만료로 인하여 商標權이 消滅한 경우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商標登錄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⑥제1항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第8條 (선출원) ①~⑤(생략)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1.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⑦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第9條 (商標登錄出願) ①~②(생략)

③團體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標章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定款을 첨부한 團體標章登錄出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⑧(생략)

⑨團體標章登錄出願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併의 경우에는 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第14條 (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①出願人은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15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通知書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 請求日부터 30日 이내 또는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23條第2項·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또는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 제출기간내에 補正할 수 있다.<改正 1993.12.10, 1995.1.5, 2001.2.3>

第15條 (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出願人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후에 第23條第2項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理由의 통지를 받거나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期間 이내에 그 拒絶理由나 異議申請理由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1. 第23條第2項 또는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 提出期間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 提出期間
3.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의 請求日부터 30日

제17조의2 (수정정관의 제출)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第22條의2 (專門調査機關에 대한 商標檢索 의뢰등) ①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專門調査機關에 대하여 商標檢索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商標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또는 관계인에게 協助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기준 및 商標檢索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8.22]

第23條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1. 第3條 但書, 第6條 내지 第8條, 第10條第1項, 第12條第2項 後段·第5項·第7項 내지 第9項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2.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3. 條約當事國에 登錄된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로서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代理人이나 代表者 또는 商標登錄出願日전 1年 이내에 代理人이나 代表者이었던 者가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 다만, 그 權利者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동항제3호의2 및 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第 4 章 商標登錄料 및 商標登錄등

第51條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1. 자기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 또는 著名한 雅號·藝名·筆名과 이들의 著名한 略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다만,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不正競爭의 目的으로 그 商標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의 普通名稱·産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 또는 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및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3.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와 현저한 地理的 名稱 및 그 略語 또는 地圖로 된 商標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第 6 章 商標權者의 보호

第66條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거나 他人의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他人의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가 표시된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을 讓渡 또는 引渡하기 위하여 所持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第 7 章 審 判

第71條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指定商品마다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1.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第3條 但書, 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2項 後段·第5項 및 第7項 내지 제9항, 제2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각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3.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그 商標登錄出願에 의하여 발생한 權利를 承繼하지 아니한 者에 의한 경우
4. 商標登錄후 그 商標權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權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登錄商標가 條約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第73條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①登錄商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削除 <1997.8.22>
2. 商標權者가 故意로 指定商品에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하거나 指定商品과 유사한 商品에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3.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登錄商標를 그 指定商品에 대하여 取消審判請求日전 계속하여 3年 이상 國內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第54條第1項 後段·第5項·第7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團體標章의 設定登錄을 한 후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을 變更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7. 第23條第3號 本文에 해당하는 商標가 登錄된 경우에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가 당해 商標登錄日부터 5年 이내에 取消審判을 請求한 경우

8. 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가 指定商品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商標權者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商標權의 移轉으로 인하여 유사한 登錄商標가 각각 다른 商標權者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人이 자기의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不正競爭을 目的으로 자기의 登錄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10.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상표법시행령]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86조의16제3항 후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①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 자. (생 략)

차. 정관의 요약서(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2.·3. (생 략)

[상표법시행규칙]

제4조 (출원서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출원서>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1.6.30>

1. 삭제<1998.12.31>
2. 상표견본 1통
3.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한다) 각 1통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업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5. 삭제 <2001.6.30>
6.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삭제 <2001.6.30>

② 제1항의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⑤(생략)

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 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호받고 있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가공 및 유통현황(당해 지역전체, 출원인, 소속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국내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제10조(서류 등의 보정 또는 수정정관의 제출) ①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을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정관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정정관 및 그 정관의 요약서 각 1통(수정정관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5조(상표등록증 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표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상표・서비스표등록증은 별지 제7호의2서식, 단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 업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상표심사기준]

第7章의 2 地理的 表示 團體標章

第50條의2(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① 정관(정관의 부속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는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1조의2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부합하여야 하며,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동 입증 서류와 불일치하는 내용

은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소속단체원의 단체가입 등에 관한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규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한 경우, 단체의 가입조건등이 사회통념상 내용적·절차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第50條의3(출원인의 적격 등)①출원인은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가공자단체 또는 이들의 연합회 등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생활의 근거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토지나 공장등의 주요 설비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제1항의 사실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관공서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서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④출원인인 생산자단체등에는 2 이상의 법인·개인·조합 또는 단체 등이 소속단체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은 단일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는 없다.

⑤출원인 적격 등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의견제출통지를 한다.

第50條의4(표장의 심사)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1.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로고·도형 또는 출원인의 명칭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리적인 명칭이 아닌 비지리적 명칭(에펠탑)이나 엠블렘(에펠탑의 형상)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지리적 명칭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경우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표장이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표장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표장으로 보아 의견제출통지를 한다.

1.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는 경우

2. 표장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수식 또는 한정하거나 별도의 식별력을 가진 문자를 결합한 경우

3.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로고 등을 결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부분이 과도하게 약화되거나 희석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2개 이상의 시·군명을 결합하거나 광역시·도명 또는 시·군명과 읍·면·동명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지명등을 결합한 경우(다만 전통적으로 2개 이상의 지명을 결합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들에게 2개 이상의 지명등을 결합한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 부분을 제외한 표장의 나머지 부분을 삭제보정하는 내용의 상표보정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제36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요지변경으로 본다.

第50條의5(지정상품의 심사)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이 경우에도 포괄명칭이나 불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해서는 1상표1출원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전통적으로 포괄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고 현실적으로도 포괄명칭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

2. 원재료 상품 및 그 원재료 상품의 주원료가 되는 것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복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의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을 갖고 있어서 개별 지정상품별로 각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여야 한다.

第50條의6(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 ①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기재내용의 신뢰성여부를 판단한 다음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의 기재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대학 등의 학술기관·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 등의 자료

2. 관련 분야에 대한 석·박사 등의 논문이나 전문분야의 교과서나 잡지 등에 게재된 자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또는 업무관련 자료나 연구용역보고서 등의 자료

4. 주요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자료로서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5. 기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이 동종 상품 일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의 동종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대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식별력(특별현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④ 상품의 명성에 대한 심사는 상품의 유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증빙자료,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등의 자료 및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주지상표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⑤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은 자연히 명성을 수반하고, 명성은 또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주로 기인하므로,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와 명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는 함께 제출되고 함께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50條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①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해당지역에 고유한 전통적인 생산비법이나 특유한 가공방법, 포장방법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요소로 한다.

②사회경험칙상 자연적 요소나 인적요소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인이 없으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가 성립될 경우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 간에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③ 제50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에 준용한다.

第50條의8(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①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기후, 토양, 지형등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따라 일정지역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의 기재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그 대상지역을 정확히 표시한 지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구역내의 일부로 한정되거나 해당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사용되어야 하는 기후, 토양 또는 지형 등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이 해당 지리적 표시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속하는 행정구역보다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의 단체가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第50條9(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원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말한다.

第50條의10(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구역 안의 특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구성,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적정성, 품질등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등에 관한 사항과 출원인의 대표성여부 등에 대하여, 출원인과 협의한 기간· 협의한 내용· 협의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견없음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말한다.

②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나 협의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협의 내용이나 협의결과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경우, 합의나 타협에 이르지 못하여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第50條의11(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 ①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10 규정에 의한 개별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현황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3.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관단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필요한 단체구성, 정관작성,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조정 또는 합의도출을 위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등과의 협의·자문 또는 조정 등을 위해 추진한 사항 및 노력의 정도

②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함께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 및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사관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출원인이 이를 수정보완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WTO/ TRIPs 협정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

제3절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1. 지리적 표시의 정의(제22조 제1항)

Article 22 :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1.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2. 지리적 표시의 보호(제22조 제2항, 제3항)

2. In respec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Members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
   (a) the use of any means in the designation or presentation of a good that indicates or suggests that the good in question originates in a geographical area other than the true piace of origin in a manner which misleads the public as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
   (b) any use which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bis of the Paris Convention(1967).

2.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a) 당해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소개 수단의 사용
   (b) 파리협약(1967) 제10조의 2의 의미 내에서의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

3. A Member shall, ex officio if its legislation so permits or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refuse or invalidate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which contains or consists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respect to goods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indicated, if use of the indication in the trademark for such goods in that Member is of such a nature as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true place of origin.

3.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자기 나라 내에서 이러한 상품의 표시사용이 대중에게 진정한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격인 경우, 표시된 영토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 또는 무효화한다.

3. 동일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22조 제4항)

4.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although literally true as to the territory, region or locality in which the goods originate, falsely represents to the public that the goods originate in another territory.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는 상품의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이 문자상으로는 사실일 경우에도 그 상품이 다른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오인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적용된다.

4. 포도주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제23조 제1항)

Article 23 : Addition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1. Each Member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use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wines for wines not originating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quest ion or identifying spirits for spirits not originating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question, even where the true origin og the good is indicated 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used in translation or accompanied by expressions such as "kind", "type", "style", "imitation" or the like.

1. 각 회원국은 비록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의 표시가 나타나 있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이해당사자가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또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증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5. 상표등록과의 관계(제23조 2항)

2.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for wines which contains or consists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wines or for spirits which contains or consists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spirits shall be refused or invalidated, ex officio if domestic legislation so permits or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with respect to such wines or spirits not having this origin.

2.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포도주 상표의 등록, 또는 증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증류주 상표의 등록은 그러한 원산지를 갖지 아니하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거부되거나 무효화된다.

6.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보호(제23조제 제3항)

3. In the case of homonymous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protection shall be accorded to each indicati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rticle 22 above. Each Member shall determine the practic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homonymous indications in question will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ensure equitable treatment of the Producers concerned and that consumers are not misled.

3. 포도주에 대한 동음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표시에 대해 보호가 부여된다. 각 회원국은 관련 생산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오도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해 동음의 지리적 표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결정한다.

7.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 등록시스템(제23조제 제4항)

4.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negotiations shall be undertaken in the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eligible for protection in those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system.

4.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 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 무역관련지식재산권이사회에서 추진된다.

8. 국제협상 개시 합의(제24조 제1항)

Airticle 24 : International Negotiations ; Exceptions

1. Members agree to enter into negotiations aimed at increasing the protect ion of individual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Article 2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4-8 below shall not be used by a Member to refuse to conduct negotiations or to conclude hi 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In the context of such negotiations, Members shall be willing to consider the continued applicability of these provisions to individual geographical indications whose use was the subject of such negotiations.

1. 회원국은제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증대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한다. 아래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회원국에 의해 협상의 진행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협상의 관점에서 회원국은 이러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동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9.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 검토(제4조 2항)

2. The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keep under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 first such review shall take place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Any matter affecting th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ese provisions may be drawn to the attention of the Council, which, at the request of a Member, shall consult with any Member or Members in respect of such matter in respect of which it has not been possible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hrough bilateral or plurilateral consultations between the Members concerned. The Council shall take such action as may be agreed to facilitate the operation and further the objectives of this Section.

2. 무역관련지식재산권이사회는 이 절의 규정의 적용을 계속 검토한다. 이러한 첫번째 검토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일방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원국간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회원국과도 협의한다. 이사회는 이 절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합의되는 조치를 취한다.

10. 지리적 표시 보호의 경과조치(제24조 제3항)

3. In implementing this Section, a Member shall not diminish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at existed in the Membe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3. 이 절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11. 선의사용자 보호(제24조 제4항)

4.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require a Member to prevent continued and similar use of a particular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other Member identifying wines or spirits in connection with goods or services by any of its nationals or domiciliaries who have used that geographical indication in a continuous manner with regard to the same or related goods or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either (a) for at least ten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e Ministerial Meeting concluding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r (b) in good faith preceding its signature of this Agreement.

4. 이 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에게 그 국민이나 거주자가 (a) 1994년 4월 15일 이전의 최소 10년 동안 또는 (b) 동 일자 전에 선의로, 회원국 영토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타 회원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 왔을 경우 동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한 동일 또는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 지리적 표시의 계속적 및 유사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2.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제24조 제5항)

5. Where a trafemark has been applied for or registered in goof faith, or where lights to a trademark have been acquired through use in good faith either:
(a)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in that Member as defined in Part Ⅳ below ; or
(b) befor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protected in its country of origin;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this Section shall not prejudice eligibility for or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or the right to use a trademark, on the basis that such a trademark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geographical indication.

5. 아래 시기에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또는 선의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a) 제6부에서 정의된 회원국내에서의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또는
(b) 원산지국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
이 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의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13. 관용명칭화된 지리적 표시(제24조 제6항)

6.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require a Member to apply its provisions in respect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y other Member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relevant indication is identical with the therm customary in common language as the common name for such goods or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at Menber.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shall require Member to apply its provisions in respect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y other Member with respect to products of the vine for which the relevant indication is identical with the customary name of a grape variety existing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6. 이 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 대한 일반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 표시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절의 어느 규정도 일방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현재 자기나라의 영토에 존재하는 포도의 종류에 대한 통상의 명칭과 관련 표시가 동일한 포도제품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4. 지리적 표시 보호 청구시한(제24조 제7항)

7. A Member may provide that any request made under this S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use or registration of a trademark must be presented within five years after the adverse use of the protected indication has become generally known in that Member or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in that Member provided that the trademark has been published by that date, if such date is earli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adverse use became generally known in that Member, provided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not used or registered in bad faith.

7.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등록과 관련, 이 절에 따라 행하여진 요청은 보호받는 표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회원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동 상표가 회원국내 상표등록일까지 공표되고 동 등록일이 그 회원국내에서 부정적 사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에 제출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리적 표시는 악의로 사용되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된다.

15. 성명의 사용(제24조 제8항)

8.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in no way prejudice the right of any person to use, in the course of trade, his name or the name of his predecessor in business, except where such name is used in such a manner as to mislead the public.

8. 이 절의 어느 규정도 개인이 거래과정에서 본인의 성명이나 사업의 전임자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성명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보호가 종료된 지리적 표시(제24조 제9항)

9. There shall be no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to protect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are not or cease to be protect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or which have fallen into disuse in that country.

9.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협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매뉴얼

· 발행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1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TEL : (042) 481-8252
FAX : (042) 472-3561

· 작성자 : 심사관 최정태
· 발행일 : 2007년 12월

· 인 쇄 : 금강인쇄사 (TEL. (042) 4847403~4

ISBN 978-89-6199-112-4 13500